

의안번호	제 58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

##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#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8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11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위탁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“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-9(방서동)
- 위탁 계약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- 위탁방법 :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또는 신규공모
- 운영예산 : 시설운영수익으로 충당(위탁경비 미지원)
- 위탁 주요사무
  -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
  -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
  -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3. 참고사항

가. 現, 충청북도 체육회관 운영 현황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-9(방서동)
- 규 모 : 부지 5,314㎡, 건축연면적 4,856.03㎡ (지하2, 지상4)
- 수탁기관 : 충청북도체육회(2014. 3. 1. ~ 2017. 2. 28.)
- 운 영 비 : 시설운영 수익으로 충당(위탁경비 미지원)

- 주요업무
  - 도 단위 체육단체 및 회원종목단체 사무실 제공
  - 체육시설 사용료 등 수입 통한 도내 체육진흥사업비 조성
  -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조직·인력 : 23명(사무처장 1, 본부장 1, 부장 5, 직원 16)
- 이용현황 : 등록회원 600명(월) ※ 1일평균 이용인원 200명정도
- 충북체육회관 운영경과
  - 1995. 7. 31. 충북체육회관 준공(총사업비 2,720백만원)  
 ※도비 1,500, 교육청 100, 체육회기금 500, 도민성금 620
  - 1995. 9. 30. 기부채납(충북체육회→충청북도)
  - 1995. 9. ~ 2008. 2. 충북체육회 무상사용(12년 5개월)
  - 2008. 3. ~ 2011. 2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
  - 2011. 3. ~ 2014. 2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(1회 갱신)
  - 2014. 3. ~ 2017. 2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(2회 갱신)
  - 2017. 3. ~ 2020. 2. 충북체육회 위탁운영(3회 갱신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-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(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 등)
-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(관리 및 위탁운영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## 관련 법령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27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**제9조 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생활체육진흥법

**제11조 (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·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·수익·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□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

- 제23조 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**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·제2항·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·제21조에 따라 위탁범위와 위탁기간, 연간 위탁료(사용료 포함)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-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·제8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.

## □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

- 제4조 (관리 및 위탁운영)** ① 충청북도체육회 등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등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 
<개정 2016. 12. 30>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으로부터 하되, **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**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.
-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**부칙 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